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연월일 : 2012. 9.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의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 군정소식지(안, 제3조 ~ 제9조)

- 군정소식지의 명칭, 내용, 군민기자 운영 등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3장 군정방송(안, 제10조 ~ 제13조)

- 군정방송의 제작, 내용, 운영요원 등 군정방송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4장 홍보대사(안, 제14조 ~ 제17조)

-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해촉,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12. 7. 27 ~ 8. 16)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강원도 시·군 관련 조례(규정) 운영 현황 1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창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기자"란 평창군민으로서 일반소양 능력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군정방송"이란 군정홍보를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작한 영상홍보물을 말한다.
3. "홍보대사"란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군정소식지

제3조(명칭) 평창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평창 이야기"로 한다.

제4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매월 1회 이상 발간한다.

제5조(규격과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부수는 군수가 별도로 정
한다.

제6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관계 기관 및 단체 활동소식 등 지역소식
3. 군민기고, 미담
4. 문화예술, 주요행사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군민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 등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군민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
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민기자에게는 군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내라도 군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군민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군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상) ① 군민기자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민기자가 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군정방송

제10조(제작)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정방송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자체제작이 곤란할 경우 방송물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내용) 군정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군정 추진사항 및 행정정보
2. 의회 운영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3. 지역의 문화, 관광 등의 홍보
4. 그 밖에 군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

제12조(운영요원) 군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과 같다.

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
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
3. 촬영·편집요원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사람
4. 리포터 :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방송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운영요원 선발) ① 군수는 군정방송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홍보대사

제14조(임무) 군수는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국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3. 군의 홍보 동영상물 및 행정광고 제작 출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국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예우) ①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축 장

성 명

귀하를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오니,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군민기자가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 등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 지급(안 제9조)
- 군민기자에게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 지급(안 제9조)
-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방송 제작(안 제10조)
- 홍보대사 임무수행 시 필요 경비 지급(안 제1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위촉 전,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연락처	(033) 330 -220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시·군 관련 조례(규정) 운영 현황

시군	조례(규정) 명	제정일	비 고
춘천	춘천 시보 조례	'95.2.6	
원주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10.5.14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05.11.18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06.1.13	
강릉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07.5.16	
동해	동해시정신문 발간조례	'96.6.17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09.10.30	
태백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06.6.27	
속초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09.4.30	
삼척	삼척시보 발간 규정	'95.8.29	
홍천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11.3.31	
횡성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08.1.11	
	횡성군 회보 발행규정	'78.2.15	
영월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11.3.11	
	영월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09.6.26	
정선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06.12.18	
철원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09.8.17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10.2.22	
양구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08.7.8	
고성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05.7.29	